powerful pohang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| 기 | 관 | 의 | 장 | |
|---|---|---|---|---|--|
| 선 | | | | | |
| 람 | | | | | |
| | | | | | |



포항시보

제858호 2011. 11 29(화)

 ◆ 훈 령 ▶
 ○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(제243호)
 2

 ◆ 고 시 ▶
 ○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(제2011-100호)
 9

 ○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(제2011-101호)
 11

 ◆ 공 고 ▶
 ○하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(직권폐차) 공고(제2011-1100호)
 12

 ○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(폐차)공고(제2011-1103호)
 15

 ○공 시 송 달 공 고(제2011 - 1106호)
 17

 ○여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공고(제2011-1109호)
 19

 ○제183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집회 공고(시의회공고 제12호)
 25

 ○수돗물 수질검사 결과
 26

| 회 | | | | |
|---|--|--|--|--|
| 람 | | | | |

발행 : 포항시 편집 : 홍보담당관(☎270-2233)

190×268 신문용지 70g/m²

훈 령

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포항시장 박 승 호

2011년 11월 일

포항시 훈령 제 243호

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

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목적 중 "포항시 향토생활관(이하 "향토생활관" 이라 한다)"를 "포항시 향토 생활관"으로 한다.
- 제2조제1항 중 "향토생활관"을 "포항시 향토생활관(이하 "향토생활관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- 제3조제2항 중 "거주사실 30점, 생활정도 30점, 학교기준 25점, 성적기준 10점, 그밖에 5점"을 "거주사실 25점, 생활정도 30점, 학교기준 20점, 성적기준 15점, 그밖에 10점"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"제외하며 1가구당 1명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"를 "제외 한다"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"신입생-수학능력시험 점수"를 "신입생-3학년 1학기 내신성적점수"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"포항시 향토생활관"을 "향토생활관"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세부 선발기준

| | 구 분 | 심 사 항 목 | 배점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총 점 | | 100 |
| | 거주사실 (25) | 1. 10년 이상 2. 5년 이상 ~ 10년 미만 3. 3년 이상 ~ 5년 미만 4. 1년 이상 ~ 3년미만 | 25 20 15 10 |
| (7 | 생활정도 내산세납부액) (30) | 재산세 납부액(세대합산) 기준 1. 재산세 미과세자 2. 10,000원 미만 3. 10,000원 이상 ~ 50,000원 미만 4. 50,000원 이상 ~ 100,000원 미만 5. 100,000원 이상 | 30 25 20 10 5 |
| Ž | ÷신학교 기준 (20) |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자중 1. 3개 과정을 졸업한 자 2. 2개 과정을 졸업한 자 3. 1개 과정을 졸업한 자 4. 기 타 | 20 15 10 5 |
| 성 적 기 준 | -신입생- |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 기준 1. 평균 2등급 이상 2. 평균 4등급 이상 ~ 2등급 미만 3. 평균 4등급 미만 | 15 10 5 |
| (15) | -재학생,복학생- | 1. 직전학기 평점 4.0 이상 2. 직전학기 평점 3.3 이상 ~ 4.0미만 3. 직전학기 평점 3.3 미만 | 15 10 5 |
| | 기 타 (10) |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애인(학생 본인) 다자녀가정(셋째이상) 다문화가정 | 10 |

[※] 동점일 경우는 생활정도가 우선인 순위자 선발

2011. 11. 29(화)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|
|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해당학교 내 <u>포항시 향토생활관(이</u> <u>하 "향토생활관"이라 한다)</u> 의 입 사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|
| 제2조(입사생의 자격 등) ① <u>향</u> 토생 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(복 합생 포함)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어야 한다. ② (생 략) | 제2조(입사생의 자격 등) ① <u>포항시</u> <u>향토생활관(이하 "향토생활관"이</u> <u>라 한다)</u>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3조(선발기준 등) ① (생 략) ② 심사평점은 100점 만점에 거주 사실 30점, 생활정도 30점, 학교 기준 25점, 성적기준 10점, 그밖에 5점을 적용한다. ③ 입사기간은 해당 학년(1년)으로 하며, 재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해당대학교 기숙사 규정」에 의 하여 선발된 자는 <u>제외하며 1가구</u> 당 1명에 한하여 선발 할 수 있다. ④ (생 략) | 제3조(선발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거주 사실 25점, 생활정도 30점, 학교 기준 20점, 성적기준 15점, 그밖에 10점 ③ |

| 세5소(입사신성) (생 탁 | (입사신청) (생 | 략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
- 1. ~ 2. (생 략)
- 3. 성적증명서(재학생-직전학기, 신입생-수학능력시험 점수)1부.
- 4. ~ 5. (생략)

제8조(위원회) <u>포항시</u> <u>향토생활관</u>의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입사생선발 심사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의 임무 는 포항시시정조정 위원에서 대행 한다.

| 제53 | ٤(٩ | 십사 | 신청) | (현 |] 행과 | 같음) |
|-----|-----|----|-----|----|------|-----|
| 1. | ~ | 2. | (현행 | 과 | 같음) | |

3. -----

신입생-3학년 1학기 내신성적 점수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| 제8조(위원회) 향토생활관 |
|----------------|
|----------------|

| _ | - | _ | -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

| | | 현 행 | | | | 개 정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표】 포항시 |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기 | <u>준</u> | - | 별 표 】 포항시 |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기 | <u>준</u> |
| 구 | . 분 | 심 사 항 목 | 배점 | Ť | 보 분 | 심 사 항 목 | 배점 |
| 총 | · 점 | | 100 | াম্ব | · 점 | | 100 |
| 11 | 주사실 <u>(30)</u> | 1. 10년이상 2. 5년이상 ~ 10년미만 3. 3년이상 ~ 5년미만 4. 1년이상 ~ 3년미만 | 30 25 20 15 | 7 | 주사실 <u>(25)</u> | 1, 10년 이상 2, 5년 이상 ~ 10년 미만 3, 3년 이상 ~ 5년 미만 4, 1년 이상 ~ 3년미만 | 25 20 15 10 |
| 11 - | 활정도 산세납부 액) (30) | 재산세 납부액(세대합산) 기준 1. 재산세 미과세자 2. 10,000원 미만 3. 10,000원 이상 ~ 50,000원 미만 4. 50,000원 이상 ~ 100,000원 미만 5. 100,000원 이상 | 30 25 20 10 5 | 11 . | 생활정도 산세납부 액) (30) | 재산세 납부액(세대합산) 기준 1. 재산세 미과세자 2. 10,000원 미만 3. 10,000원 이상 ~ 50,000원 미만 4. 50,000원 이상 ~ 100,000원 미만 5. 100,000원 이상 | 30 25 20 10 5 |
| 11 - | 신학교 기준 <u>(25)</u> |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자증 1. 3개 과정을 졸업한 자 2. 2개 과정을 졸업한 자 3. 1개 과정을 졸업한 자 4. 기 타 | 25 20 15 10 | | _출 신학교 기준 <u>(20)</u> |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자증 1. 3개 과정을 졸업한 자 2. 2개 과정을 졸업한 자 3. 1개 과정을 졸업한 자 4. 기 타 | 20 15 10 5 |
| 성 적 기 준 | -신입생 - |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에 준하는 과목의 1.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균 2등급 이상 2.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균 2등급 미만 | <u>10</u> _ <u>5</u> | 성 적 기 준 | -신입생 - |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 기준 1. 평균 2등급 이상 2. 평균 4등급 이상 ~ 2등급 미만 3. 평균 4등급 미만 | 15 10 5 |
| (10) | -재학생, 복학생- | ⟨신 설⟩1. 직전학기 평점 3,3 이상2. 직전학기 평점 3,3 미만 | 10 _5 | (15) | -재학생, 복학생- | 1. 직전학기 평점 4.0 이상 2. 직전학기 평점 3.3 이상 ~ 4.0 미만 3. 직전학기 평점 3.3 미만 | 15 10 5 |
| | <u>타</u> (5) | 1.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2. 국민기조생활수급자 자녀 3. 장애인(학생) 〈신 설〉 〈신 설〉 | 5 | 2 | 기 <u>타</u> (10) | 1.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2. 국민기조생활수급자 자녀 3. 장애인(학생 본인) 4. 다자녀가정(셋째이상) 5. 다문화가정 | <u>10</u> |
| ※ 동 | 등점일 경 | 우는 성적우수자가 우선순위 | | * 1 | 동점일 경 | 우는 생활정도가 우선순위 | |

1. 개정이유

포항시 출신 대학생의 학사생활지원을 통한 학부모 경제적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포항시 향토생활관 건립비 지원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기준 심사평점 변경(안 제3조)
- 향토생활관 입사신청 서류 변경(안 제5조)
 - 신입생 :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⇒ 3학년 1학기 내신성적 점수
-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기준 변경(별표)
 - 성적우수자 ⇒ 생활정도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1-100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포항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

포항시장 박 승 호

2011. 11.

- 1. 사업시행지 :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,중산리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ㅇ 종 류 : 체육시설
 - ㅇ 명 칭 : 포항 송라제니스 컨트리클럽
- 3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소
 - ㅇ 주 소 :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48번지

ㅇ 성 명 : (주)홍익레저산업 대표이사 이상규

4. 사업계획 내용

ㅇ 부지면적 : 1,008,872㎡

o 건축면적 : 5,282.16㎡ (연면적 9,403.64㎡)

ㅇ 사업기간

- 당초: 2003.12.26 ~ 2011.11.24 - 변경: 2003.12.26 ~ 2012.5.25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명세 : 변경사항 없음

6.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변경사항 없음

※ 관계 편입토지조서,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(☎054-270-34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고시 제2011-101호

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02-1번지 외 2필지(지방하천 : 냉천)내에 해병대 포항 문덕숙소 도시가스배관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(공작물의 신축)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 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>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 항 시 장 (인)

> > 2011. 11. 29

□ 하천점용(공작물의 신축)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

| ə 키 카 머 | 점- | 용위치 | 건 Q 모 건 | 점용면 | 적(m²) | 점용기 | 간 | 7-l Q 71 | ਸ਼ੀ ਹ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하천명 | 읍면동 | 지번 | 점용목적 | 일시 | 영구 | 일시 | 영구 | 점 용 자 | 비고 |
| 냉천 (지방하천) | 오천읍 문덕리 | 202-1번지 외 2필지 | 배관 매설 | 464 | 253.8 | 2011. 12. 5 ~ 2012. 1. 31 | 허가일 로부터 영구 | 영남에너지 서비스(주) 대표 조성대 | |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 2011 - 1100 호

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(직권폐차) 공고

우리시 관내 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(직권폐차)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(150만원 이하의 범칙금) 되며,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포항시장 박 승 호

2011. 11. 28.

1. 공고기간: 2011. 11. 28. ~ 2011. 12. 7. (10일간)

2. 폐 차 장 소 : 대원종합폐차장

- **3. 폐차 예정일 :** 2011. 12. 8.부터
- **4. 문 의 처 :**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☎(054)270-3643
- 5.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6. 대 상 차 량 :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(폐차)대상 내역 참조

□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(폐차)대상 내역

| 연번 | | 방 | 치 차 량 내 역 | 사 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-1 | 등록번호 | 미 상 | |
| | 차 량 | 차대번호 | VT125F1006417 | |
| 1 | 정 보 | 차 명 | 마그마 (적색) | |
| (′ 11- 131) | | 소 유 자 | 미 상 | |
| | <u></u> | 보관장소 | 대원종합폐차장 | |
| | ŀ | 방치장소 | 포항시 북구 창포동 619-2 양산박 뒤편 골목 | 새마을금고 맞은편 |
| | =1 | 등록번호 | 미 상 | |
| | 차 량 | 차대번호 | KM4CF42A711101231 | |
| 2 | 정 보 | 차 명 | 효성 EXCEED (적색) | |
| (′ 11- 164) | | 소 유 자 | 미 상 | |
| | | 보관장소 | 대원종합폐차장 | |
| | ŀ | 방치장소 | 포항시 남구 대잠동 462-5 | 골든빌원룸 앞 도로 |
| | =1 | 등록번호 | | |
| | 차 량 | 차대번호 | | |
| 3 | 정 보 | 차 명 | | |
| | | 소 유 자 | | |
| | | 보관장소 | | |
| | ŀ | 방치장소 | | |

포항시 공고 제 2011 - 1103 호

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(폐차)공고

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(직권폐차)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(150만원 이하의 범칙금)되며,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포항시장 박 승 호

2011. 11. 29.

- 1. 공고기간 : 2011. 11. 29. ~ 2011. 12. 18. (20일간)
- 2. 폐 차 장 소 : 포항시 관내 폐차장
- 3. 폐차 예정일 : 2011. 12. 19.부터
- 4. 문 의 처 :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☎(054)270-3643
- 5.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6. **강제처리대상차량** : 88버1301호 외 3대

공고처리 내역

| ♦ \\% \\% | 4 : 4 ◆3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| 공고기간: 2011-11-29에서 호 차 명 | 2011–12–18 | 40. 下, |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
| 교 | 전 (전 (전 (전 (전 (전 (전 (전 (전 (전 (전 (전 (전 (전 | 미 | K⊦ ≺ł | 0 시 0 H 년 한 0 H | OI해관계 |
| 2011- | 88배 1301 이화연 | 봉고프런티어 780506-****** |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87-1 202호 | 포항시 북구 축도동 139-44 강변장모텔옆 도 로 흥해종합폐차장 | ●울산 남구 환경관리과 - 환경개선부담금 체납('11.07.05.) 교통행정과 - 의무보험('11.11.14) ●단독저당 : 우리파이낸설㈜ 수원 팔달 인계동 1122-12 ('10.08.23.) |
| 2011- | 31L/2801 | 0) 巨人 |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음 달전로 291 103동 1709호 (대유타운) | 포항시 북구 대흥동 613-1 역전파출소앞 도 로 | ●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- 손배법('10.2.24), 자관법('10.3.12) ●포항시북구 세무과 - 지방세체남('10.8.23) 건설교통과 - 주정차위반(2009-441428) ●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- 과태료체남(200971906024286, 200971906033342,190670100039202) |
| 2011- | 118 H 84다5536 박철조 | 갤로파이노베이 선밴 671201-***** |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로 109번길 6-4 103호 (인덕 동) | 대응 6 6 급 폐 시 6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08-1 장성현대 1065 앞 도로 하종함폐 차장 | ●포항시남구 세무과 - 지방세체남('11.8.18) ●부산 연제구 세무과 - 자동차세 등 9건 환경위생과 - 배출가스정밀검사 1, 환경개선부담금 18건 교통행정과 - 주정차위반 ●부산 중구 교통행정과 - 주정차위반 ●부산 북구 교통행정과 - 주정차위반 ●부산 사상구 교통행정과 - 주정차위반 ●부산 사상구 교통행정과 - 주정차위반 ●부산 수영구 교통행정과 - 주정차위반 ●부산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- 도로교통법위반('08.8.6.) ●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- 건강보험료제남('03.4.25.) ●현대개피탈(주) - 부산지원 2003카단21717('03.4.8.) ●저당: 김동욱 '02.1.21. |
| 2011– 154 | 경북29다3146 최수동 | 쏘나타투1.8 590927~***** |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 산천서로6길 39 (월피동) |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 리 18-7 신형석리아파트 (주)태경ENG종합폐차장 | ●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- 손배법위반과태료('10.12.21) |

포항시 공고 제2011 -1106호

공시송달공고

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"대부업법"이라 한다.)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시 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 승 호

2011년 11월 일

- 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
- 2. 공 고 기 간 : 2011. 11. 30. ~ 12. 29(30일간)
- 3. 송달 대상자 : 붙임(7개 업체)

4. 송 달 내 용

- 해당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,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대부업 등의 등록이 제한됩니다.
- ※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
-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경제노동과(054-270-24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소재확인 공고 업체 현황

| 번호 | 등록번호 | 상호 | 대표자 | 주민등록번호 | 영업장 소재지 주소 | 등록일(변경일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- | 2000-경상북도-00063 K.H.G 대부, 대부중개 | K.H.G 대부, 대부중개 | 김흥규 | 590509-1 * * * * * | 590509-1***** 포항시 북구 상원동 468-2 | 2009. 04. 01 |
| 2 | 2009-경상북도-00099 믿음컨설 | 믿음컨설팅대부 | 하성수 | 861108-1***** | 허성수 861108-1***** 포항시 남구 대도동 118-26 | 2009.06.05 |
| 3 | 2009-경상북도-00189 천지대부 | 천지대부 | 김종명 | 570217-1***** | 570217-1***** | 2009. 11. 26 |
| 4 | 2010-경상북도-00098 신포항대부 | 신포항대부 | 강남욱 | 801120-1***** | 강남욱 <mark>801120-1*****</mark> 포항시 북구 신흥동666-3 | 2010. 08. 31 |
| 5 | 2010-경상북도-00158 선우대부 | 선우대부 | 최상화 | 760527-1***** | 760527-1******표항시 북구 동빈1가 57-35 2층 | 2010. 12. 17 |
| 9 | 2011-경북포항-04 | KCS대부, 대부중개 | 김종섭 | 570401-1***** | 김종섭 570401-1***** | 2011. 03. 21 |
| 7 | 2011-경북포항-06 | 아주대부,대부중개 | 최진주 | 761121-2***** | 최진주 761121-2***** | 2011. 04. 05 |
| | | | | | | |

포항시 공고 제2011-1109호

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공고

포항시 장기면 신창2리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 승 호

2011.12.1

□ 신청기간 : 2011. 12. 1 ~ 2011. 12. 20(20일간)

□ 대상마을 : 장기면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 (사무장 1명)

□ 신청자격

- 채용공고일 현재 30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로써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 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
- ※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: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개발·운영 체험활동 지도, 마을홍보·마케팅,홈페이지관리·운영, 회계·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, 주민교육 등
- 상근직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
- ※ 다만, 지원대상마을 및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어는 겸직 가능
- ※ 마을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또는 배우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,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겪임 불가
- ※ 동일한 조건일 경우, 여성, 연령이 낮은 지원자, 어업계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
- ※ 가급적 어촌계원은 배제하고 체험 전문가 등을 채용

- 면접일시 및 장소 : 2011. 12. 23(금) 11:00 ~ , 시청3층 소회의실
- □ 구비서류
 -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원서 1부
 -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
 - 기타증빙서류(졸업증명서, 교육수료증, 자격증 등)
- □ 급 여 : 월 120만원(보조90%, 마을자부담10%)
- □ 서류제출 및 기타문의
 - 포항시 경제산업국 수산진흥과 수산시설담당(☎054-270-2762)

[별지 제3호 서식]

〈채용희망자용 : 앞면〉

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서

| 신청자 | (성명) | (주민등록번호)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|
| ①나 이(만) | | ②학력(전공) | |
| 주 소 | | | |
| 연락처 | | 이메일 주소 | |
| ③채용희망마을 | | | |
|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| | | |
| ⑤직무수행계획 (요약) | | | |
| ⑥주요경력 | | | |
| ⑦기타 특이사항 | | | |

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일: 년월일

신 청 인 : (인)

별첨 :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4호 서식)

〈채용희망자용 : 뒷면〉

※ 작성요령

① 나 이(만):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

② 학력(전공):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. 고등학교부터 기재

(예시 : 00학교 00대학 00과(전공) 00년도 졸업)

③ 채용희망마을 :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

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: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
- ⑤ 직무수행계획(요약) : 사무장 채용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(별첨의 사업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)
- ⑥ 주요경력 :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 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 으로 상세히 기재
 - ※ 년,월을 표기하고, 관련 자격증 소지(전산 등)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
 - *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(예시) :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체험활동 지도, 마을 홍보·마케팅, 홈페이지 관리·운영, 회계·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, 주민 교육 등
- ⑦ 기타 특이사항 :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 - *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별지 제4호 서식]

〈채용희망자용 : 앞면〉

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

| ①신청자 | (성명) | (| 주민등록번호)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|
| ②채용희망마을 | | | | |
| ③추진목표 | | | | |
|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| | | | |
| ⑤담당업무(분야) 및 주요내용 | | | | |
| | 월 | 담당업무 | 주요내용 및 계획 | 비고 |
| | | | | |
| ⑥직무수행계획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신 청 일 : 년 월 일 신 청 인 : (인)

〈채용희망자용 : 뒷면〉

※ 작성요령

① 신청자 :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

② 채용희망마을 :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

③ 추진목표 :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

-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: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
- ⑤ 담당업무(분야) 및 주요내용 :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(분야) 및 주요내용을 우선 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
 - * 담당업무(분야) 작성예 :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체험활동 지도, 마을 홍보· 마케팅, 홈페이지 관리·운영, 회계·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,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· 운영, 주민교육 등
- ⑥ 직무수행계획 :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(추진일정, 추진방법, 추진전략 등을 명시)
 - *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포항시의회공고 제 12 호

제183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집회 공고

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, 포항시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일시 : 2011년 11월 30일(수요일) 오전 11시 00분

장소 : 포항시의회 본회의장

2011년 11월 21일

포항시의회의장 이 상 구

수돗물 수질검사 결과

2011년 1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 2011. 11. 29.

포 항 시 수 돗 물 평 가 위 원 회 위 원 장

| | 시 행 일 | 11월 중 | 검 사 기 관 | 포항시 상수도사업소, 한국수자원공사 |
|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
수 유 강 공단 양덕 **XII 2** 택 전 갈 평 병포 약성 정수장,상수원 St UF 형산강 복류수 곡강천 보류수 (수지원공사) 검 사 항 목 공근지역 안계댐수 임하댐수 진전지 눌태지수 분 기 준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망,기계 일부 1.일반세균(Total Colony Counts) 100CFU/ml0I하 0 0 0 0 0 0 0 0 0 01 2.총대장균군(Total Coliforms) 불검출/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물 3.대장균/분원성대장균군 (E.coli/Fecal Coliforms) 불검출/100m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.남(Pb) 0.01 mg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건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.16 불검출 불검출 0.15 불검출 건 6.비소(As) 0.01mg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상 7.셀fp늄(Se) 0.01mg/&이히 불건충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유 8.수은(Ha) 0.001 mg/& 이하 불건충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해 영 9.시안(CN) 0.01㎜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향 10.크롬(Cr) 0.05mg/ℓ0lō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.암모니아성질소(NH₃-N) 0.5㎜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 12.질산성질소(NO₃-N) 10mg/ℓ이하 2.0 0.9 1.0 2.2 2.2 1.2 1.7 1.3 1.2 짙 13.카드뮴(Cd) 0.005㎜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(R) 1 Omg/#이하 0.04 불검출 0.01 0.04 0.04 불검출 0.02 0.02 0.03 15.페놀(Phenol) 0.005mg/&이하 불건충 불건충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16.다이아지는(Diazinon) 0.02mg/&이하 불건충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불건출 불건충 불건충 17 파라티오(Parathion) 0.06mg/0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보건축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.페니트로티온(Fenitrothion) 0.04㎜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.카바릴(Carbaryl) 0.07mg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.1,1,1-트리클로로에탄 (1,1,1-Trichloroethane) 0.1 mg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21.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 0.01㎜/ℓ이하 불건충 불건충 불검출 불검출 불건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건충 삼 22.트리클로로에틸렌(TCE) 0.03mg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해 23.디클로로메탄(Dichloromethane) 0.02mg/ℓ0lō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영 24.벤젠(Benzene) 0.01mg/0015k 불건충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불건출 불건충 불건충 햠 0.7mg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 26.에틸벤젠(Ethyle Benzene) 0.3mg/ℓ이하 불건충 불건충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27.크실렌(Xylene) 0.5mg/세이하 불건충 불건충 불건출 불건출 불건충 불건충 불건출 불건충 불건충 28.1,1-디클로로에틸렌 (1,1-Dichloroethylene) 0.03mg/ℓ0lō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.사염화탄소 (Carbon tetrachloride) 0.002mg/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.1,2-디브로모-3-클로로프로판 (1,2-Dibromo-3-chloropropane) 0.003mg/ℓ이하 불검출 31.1,4-다이옥산(1,4-Dioxane) 0.05mg/£015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건출 불건충 32.유리잔류염소 (Free residual chlorine) 4.0mg/ℓ이하 0.63 0.41 0.57 0.61 0.48 0.40 0.40 0.51 0.92 제 33.총트리할로메탄(THMs) 0.1 mg/요이하 0.071 0.077 0.054 0.044 0.046 0.036 0.041 0.056 0.044 및 34.클로로포름(Chloroform) 0.08mg/ℓ0lōl 0.029 0.034 0.058 0.021 0.014 0.028 0.029 0.032 0.060 소 독 35.브로모디클로로메틴 0.03mg/£015l 0.019 0.010 0.013 0.018 0.014 0.011 0.019 0.010 0.015 부 산 36.디브로모클로로메탄 (Dibromochloromethane) 0.1mg/ℓ이하 0.006 불검출 불검출 0.007 0.008 0.002 0.008 0.002 0.002

| | | | 유 강 | 공 단 | 양 덕 | 제 2 | 택 전 | 갈 평 | 병 포 | 약 성 | 학야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구 분 | 검 사 항 목 | 정수장,상수원 - 공급지역 기 준 | 안겨 | l댐수 | 임하댐수 | 형산강 안계 | 복류수 댐수 | 진전지 | 눌태지수 | 곡강천 복류수 | (수자원공사) |
| | | 1,5 | | 동지의 | [‡] 전체 | | 연일읍 | 오천읍 | 구룡포읍 | 홍해읍 | 신망,기계 일부 |
| | 37.경도(Hardness) | 300mg/ℓ0lõŀ | 106 | 51 | 84 | 110 | 113 | 39 | 94 | 103 | 66 |
| | 38.과망간산칼륨소비량 (Consumption of KMnO ₄) | 10mg/ℓ이하 | 2.2 | 4.5 | 4.3 | 2.8 | 2.7 | 2.5 | 2.2 | 3.4 | 3.9 |
| | 39.냄새(Odor) | 무취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
| | 40.맛(Taste) | 무미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 적합 |
| | 41.동(Cu) | 1mg/ℓ0lō⊦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
| 심 | 42.색도(Color) | 5도이하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
| 미 | 43.세제(음이온계면활성제, ABS) | 0.5mg/£0 ōh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
| 전 경 향 물 | 44.수소이온농도(pH) | 5.8-8.5 | 7.0 | 6.8 | 7.0 | 7.1 | 7.0 | 6.6 | 6.8 | 6.8 | 7.5 |
| | 45.아연(Zn) | 3mg/ℓ0 ō⊦ | 0.008 | 불검출 | 불검출 | 0.002 | 0.003 | 0.024 | 0.006 | 0.068 | 0.004 |
| 질 | 46.염소이온(CI ⁻) | 250mg/ℓ0lōŀ | 26 | 10 | 11 | 28 | 27 | 12 | 25 | 13 | 16 |
| | 47.증발잔류물(Total solids) | 500mg/ℓ이하 | 173 | 75 | 112 | 186 | 193 | 68 | 189 | 169 | 130 |
| | 48.철(Fe) | 0.3㎜/ℓ이하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
| | 49.망간(Mn) | 0.05mg/ℓ이하 | 불검출 | 불검출 | 0.015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
| | 50.탁도(Turbidity) | 0.5NTU이하 | 0.12 | 0.14 | 0.11 | 0.11 | 0.12 | 0.15 | 0.14 | 0.10 | 0.07 |
| | 51.황산이온(SO ₄ ²⁻) | 200mg/ℓ0 ō⊦ | 48 | 12 | 15 | 53 | 53 | 14 | 40 | 40 | 16 |
| | 52.알루미늄(AI) | 0.2㎜/ℓ이하 | 0.02 | 0.02 | 0.04 | 0.03 | 0.04 | 불검출 | 0.02 | 0.02 | 0.03 |
|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,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

노후지역 수도꼭지

| 검 사 항 목 | 정수장 | 유 강 | 공 단 | 양덕 | 제 2 | 택전 | 갈 평 | 병 포 | 약성 |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|--|
| 검사항목 | 기 준 | 용흥동 | 송동리 | 환호동 | 해도동 | 택전리 | 문덕1리 | 구릉포리 | 마산리 | | |
| 1.일반세균 | 100CFU/ml0 ō}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| |
| 2.총대장균군 | 불검출/100ml | 불검출 | | |
| 3.대장균/분원성대장균군 | 불검출/100㎖ | 불검출 | | |
| 4.암모니아성질소 | 0.5mg/ℓ이하 | 불검출 | | |
| 5.유리잔류염소 | 4.0mg/ℓ이하 | 0.21 | 0.18 | 0.21 | 0.22 | 0.22 | 0.17 | 0.14 | 0.22 | | |
| 6.동 | 1 mg/원이하 | 불검출 | | |
| 7.아연 | 3mg/ℓ0 ō⊦ | 0.028 | 0.004 | 0.084 | 0.017 | 0.023 | 0.010 | 불검출 | 0.008 | | |
| 8.염소이온 | 250mg/ℓ0lōl | 28 | 10 | 11 | 28 | 28 | 13 | 25 | 14 | | |
| 9.철 | 0.3mg/£0 ō} | 불검출 | | |
| 10.망간 | 0.05mg/ℓ이하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불검출 | 0.016 | 불검출 | | |
| 판 |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

▶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-5454,

포항시 민원센터 ^{빨리콜레앤턴} , 학야정수장 230-4791

▶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(http://water.ipohang.org/)

◈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◈